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15
----------	------

2021년 07월 0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21년 05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06월 01일
-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시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서,
- 2021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

○ 필 요 성

- 힐링센터 쉼표는 심리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완화·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힐링센터 쉼표가 체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요원, 상담심리사 등을 통한 상담

○ 심리검진(온라인 검진 포함)

- 마음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문제의 원인과 대상자 이해 등을 위한 심리검진 실시

○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 해소, 마음 회복능력 강화, 관계성 향상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본청사 지하2층, 서소문청사 1동 1층

○ 규 모 : 본청사 83.63 m^2 , 서소문청사 62.86 m^2

○ 지원시설 : 개인상담실 각 2개, 집단상담실 각 1개, 사무실 각 1개



- 다. 민간위탁기간 : 2022.01.01. ~ 2024.12.31.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총 계		산출근거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358,900	72.3%
기 본 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기준 (단, 전문의는 촉탁의사 기본급 2배 적용)		263,100	
제 수 당			18,600	
상 여 금			25,200	
퇴직급여충당금			24,100	
사회보험료			28,000	
운 영 비			32,000	6.5%
교육훈련비	보수교육 200,000원×5명 수퍼비전 400,000원×5명		3,000	
소 모 품	문구류 등 71,000원×100개 복합기 렌탈 200,000원×12월 정수기 렌탈 40,000원×12월		10,000	
전산이용료(홈페이지 포함)	홈페이지 관리 17,040,000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960,000원		18,000	
재물보험료	83,000원×12월		1,000	

사 업 비			105,000	21.2%
	부서로 찾아가는 쉽표	1,000,000원×20회	20,000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50회	50,000	
	마음건강 캠페인	2,500,000원×2회	5,000	
	지정클리닉	1,000,000원×30명	30,000	
위 탁 비 총 계			496,000	100%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 의 일 : 2021.05.17.(월)
- 심의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략)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

다. 기 타 : 그 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위탁기간	위탁업체	선정방법
최초위탁(1차)	'13.05.07~'16.02.29.	(주)다인	공개모집
재위탁(2차)	'16.03.01~'18.12.31.	(주)다인	공개모집
재위탁(3차)	'19.01.01~'21.12.31.	(주)이지웰니스	공개모집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힐링센터 쉼표 운영에 대한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마음건강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사(지하2층)와 서소문청사 1동(1층)에 민간위탁방식(상담심리사 등 6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 관리시설인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2013년 최초 위탁, 2012.11.22. 의회 민간위탁 동의)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당초 「서울특별시 직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에 제출(가칭 ‘스트레스 치유센터’)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이후 2013년 5월부터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로 명칭을 사용함.

- 개정(2019.3.)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 현행 조례 이전(2017.7.)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서울시 힐링센터 심포 현황

- 소재지 : 본청사 지하2층, 서소문청사 1동 1층
- 규모 : 본청사 83.63 m^2 , 서소문청사 62.86 m^2
- 지원시설 : 개인상담실 각 2개, 집단상담실 각 1개, 사무실 각 1개
- 힐링센터 심포 사무
 -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심리검진(온라인 검진 포함)
 -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위치도 및 전경사진



본청사 심포 도면



서소문청사 심포 도면



본청사 심포 입구



서소문청사 심포 입구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의 민간위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2022.1.1 ~ 2024.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총 계		산출근거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358,900	72.3%
기 본 급			263,100	
제 수 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기준 (단, 전문의는 촉탁의사 기본급 2배 적용)		18,600	
상 여 금			25,200	
퇴직급여충담금			24,100	
사회보험료			28,000	
운 영 비			32,000	6.5%
교육훈련비	보수교육 200,000원×5명 수퍼비전 400,000원×5명		3,000	
소 모 품	문구류 등 71,000원×100개 복합기 렌탈 200,000원×12월 정수기 렌탈 40,000원×12월		10,000	
전산이용료(홈페이지 포함)	홈페이지 관리 17,040,000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960,000원		18,000	
재물보험료	83,000원×12월		1,000	
사 업 비			105,000	21.2%
부서로 찾아가는 쉼표	1,000,000원×20회		20,000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50회		50,000	
마음건강 캠페인	2,500,000원×2회		5,000	
지정클리닉	1,000,000원×30명		30,000	
위 탁 비 총 계			496,000	100%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1) 힐링센터 심포 설치 필요성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략)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특히, 서울시에는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민원상담자 등 감정근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바, 힐링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PTSD(외상후스트레스) 검진 등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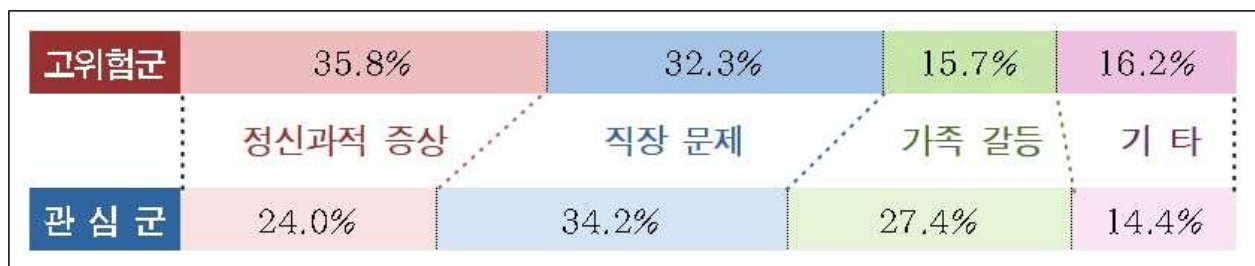
[스트레스 고위험군 현황]



※ 출처 : 「서울시 직원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23년)」, 9페이지.

- 또한,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초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일반 정신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치료 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시스템의 필요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5년간 서울시 고위험군, 관심군 주요원인 비교]



※ 출처 : 「서울시 직원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23년)」, 7페이지.

-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힐링센터 설문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바,
 - 각종 상담에 따른 비밀보장이나 인사상 불이익 방지등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과 함께 직원들을 찾아가는 선제적 역할에 대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힐링센터 설문 이용실적]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5,672	16,832	9,006	16,343	16,422	18,035	20,289	11,776
심리상담	1,490	1,958	2,323	3,125	3,837	4,478	4,013	2,155
심리검진	13,793	14,563	4,273	10,204	10,770	11,470	11,745	5,670
프로그램	389	311	2,410	3,014	1,815	2,087	4,531	3,951

2)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반대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민간위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수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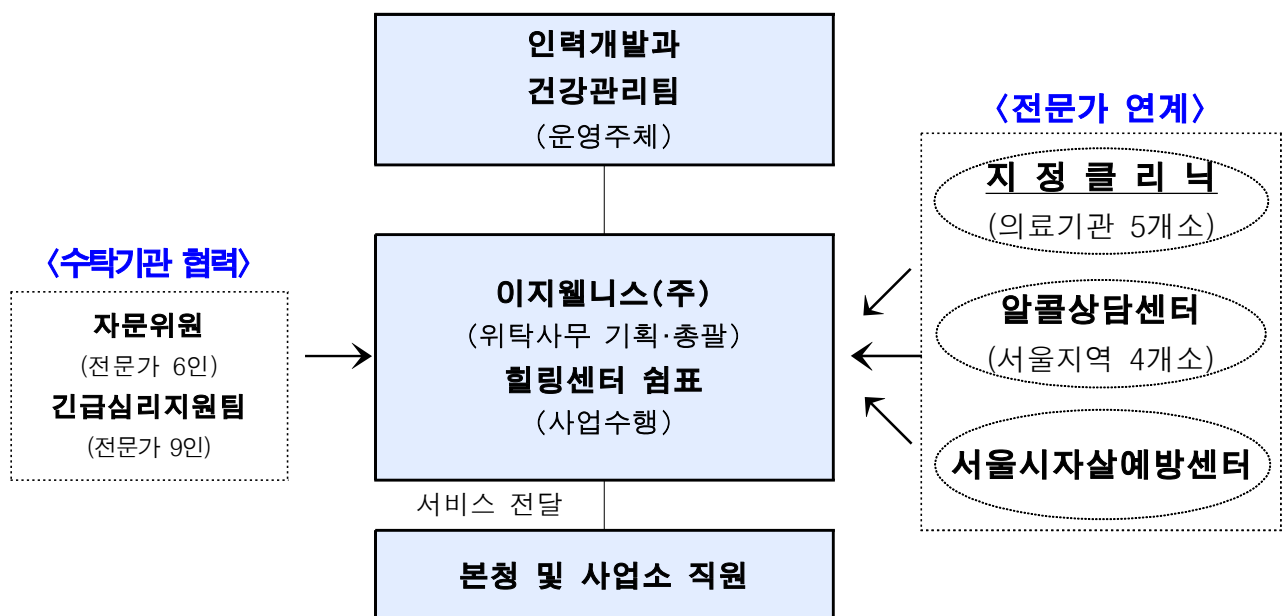
구분	위탁기간	위탁업체	선정방법
최초위탁(1차)	'13.05.07~'16.02.29.	(주)다인	공개모집
재위탁(2차)	'16.03.01~'18.12.31.	(주)다인	공개모집
재위탁(3차)	'19.01.01~'21.12.31.	(주)이지웰니스	공개모집

- 행정국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시설로서 체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힐링센터 쉼표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 의 일 : 2021.05.17.(월)
- 심의결과 : 적정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운영 체계]



- 다만, 힐링센터 쉼표 설치 이후 만족도 조사가 일정한 평균 척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평가지표중 유익성, 편안함 등의 항목이 전년대비 하락 감소 추세에 있는 바, 만족도 조사에 따른 세부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힐링센터 쉼표 만족도 조사결과(5점 척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 균	4.7	4.8	4.8	4.7	4.7	4.7	4.7	4.7
유익성	4.5	4.9	4.7	4.7	4.6	4.6	4.7	4.5
편안함	4.9	4.8	4.9	4.8	4.8	4.8	4.8	4.6
참여 만족도	4.6	4.8	4.7	4.7	4.6	4.6	4.8	4.8
적합성	4.5	4.9	4.8	4.8	4.7	4.6	4.7	4.8
권유의사	4.8	4.8	4.8	4.8	4.6	4.7	4.7	4.9
재방문 의사	4.9	4.6	4.7	4.7	4.6	4.6	4.7	4.9
환경 만족도	4.7	4.8	4.7	4.7	4.8	4.7	4.8	4.7

※ 출처 : 행정국 인력개발과 내부 만족도 조사 자료.

- 한편, 힐링센터 쉼표는 2020년 행정국 지도·점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1)에 근거) 결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수입결의서 등의 미흡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 행정국에서는 관리감독에 있어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힐링센터 쉼표 지도점검 결과]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18.12.05. ~ 12.07.	해당 없음	해당없음
'19.12.04. ~ 12.10.	해당 없음	해당없음
'20.12.07. ~ 12.08.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수입결의서 작성 요망	완 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

- '18.12.05.~12.07. : 협약에 따라 상담 및 프로그램 정상 추진
- '19.12.04.~12.10. : 심포 운영이 원활하였으며, 사업 추진도 양호함
- '20.12.07.~12.08. : 심포 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로 사업 추진에 부분적 차질 발생

3)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 검토

- 이번 서울시 힐링센터 심포 위탁 시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에서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다만, 계약기간이 단기일 경우 수탁기관은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학습을 선택할 유인이 크고, 이 경우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에 대한 규제적 계약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기간이 장기일 경우 대리인으로서 수탁기관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이로운 호혜적 학습을 선택할 유인이 크고, 이 경우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관계적 계약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결과가 있는 바, 위탁기간을 3년(2022. 1.1. ~ 2024.12.31.)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종합 의견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서울시 직원들의 심리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완화·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심리상담, 심리검진 등의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직원들의 심리상담 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바, ‘힐링센터 쉼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 비밀보장 미흡, 인사상 불이익 발생 등을 제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15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시 직원의 정신 건강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서,
- 나. 2021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
 - 필 요 성
 - 힐링센터 쉼표는 심리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완화·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힐링센터 쉼표가 체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요원, 상담심리사 등을 통한 상담
- 심리검진(온라인 검진 포함)
 - 마음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문제의 원인과 대상자 이해 등을 위한 심리검진 실시
-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 해소, 마음 회복능력 강화, 관계성 향상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본청사 지하2층, 서소문청사 1동 1층
- 규모 : 본청사 83.63㎡, 서소문청사 62.86㎡
- 지원시설 : 개인상담실 각 2개, 집단상담실 각 1개, 사무실 각 1개



본청사 심표 도면



서소문청사 심표 도면



본청사 심표 입구



서소문청사 심표 입구

마. 민간위탁기간 : 2022.01.01. ~ 2024.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총 계		산출근거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358,900	72.3%
	기 본 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기준 (단, 전문의는 촉탁의사 기본급 2배 적용)	263,100	
	제 수 당		18,600	
	상 여 금		25,200	
	퇴직급여충담금		24,100	
	사회보험료		28,000	
운 영 비			32,000	6.5%
	교육훈련비	보수교육 200,000원×5명 수퍼비전 400,000원×5명	3,000	
	소 모 품	문구류 등 71,000원×100개 복합기 렌탈 200,000원×12월 정수기 렌탈 40,000원×12월	10,000	
	전산이용료(홈페이지 포함)	홈페이지 관리 17,040,000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960,000원	18,000	
	재물보험료	83,000원×12월	1,000	
사 업 비			105,000	21.2%
	부서로 찾아가는 쉽포	1,000,000원×20회	20,000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50회	50,000	
	마음건강 캠페인	2,500,000원×2회	5,000	
	지정클리닉	1,000,000원×30명	30,000	
위 탁 비 총 계			496,000	100%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 의 일 : 2021.05.17.(월)

○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략)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

다. 기 타 : 그 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위탁기간	위탁업체	선정방법
최초위탁(1차)	'13.05.07~'16.02.29.	(주)다인	공개모집
재위탁(2차)	'16.03.01~'18.12.31.	(주)다인	공개모집
재위탁(3차)	'19.01.01~'21.12.31.	(주)이지웰니스	공개모집

※ 작성자 : 인력개발과 건강팀 장진아 (☎ 2133-5784)